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주거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청년정책총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항공안전분야의 업무 수행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7.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음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15의2.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4항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업무 정책에 관한 사항

19. 조종사(헬리콥터 분야 조종사는 제외한다)의 운항자격 심사 및 이에 대한 위촉 심사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술기준 제정”을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령의 제정·개정”을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소음적합기준 마련 및 고시 등”을 “소음기준 및 소음기준적합증명 관련 제도 및 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등”을 “등 지속감항성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형식증명(승인),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승인), 제작증명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형식증명, 제한형식 증명,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5.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

12.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등에 관한 사항

16. 정비조직의 인증·항공안전관리시스템·안전감독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1. 부품등제작자증명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

22. 수리개조승인 관련 제도·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3.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4.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의 설계·제작 관련 고장·결함 또는 기능 장애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6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항행분야의 법령·규정의 제정·개정 및 규정”을 “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의 운영절차 표준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안전감독관 자격관리”를 “감독결

과에 따른 개선조치”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항공교통 및 항공통신업무”를 “항공교통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승인”을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제정·개정, 항행감독, 국제평가”를 “이행”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항행분야 법령·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 항공로 및 공항의 표준 출발·도착 비행절차(이하 이항에서 “비행절차등”이라 한다) 관련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의2. 비행절차등의 설계 승인 및 품질보증(유효성 확인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공역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항공교통관제시설 등에 제공되는 항공기상 정보에 관한 기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1.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7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항행안전시설·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운영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7항제4호 중 “관리·유지”를 “관리·유지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및”을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등 각종 검사”를 “관련 정책 및 감독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에 관한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관한”을 “대한 정책·감독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성능적합증명”을 “성능적합증명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이용”을 “이용 허가”로 한다.

제12조제18항제1호 중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의 운영”을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 등에 대한 정책 및 감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기준”을 “자격기준 및 감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립”을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시스템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사항”을 “감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을 “제한표면 기준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4. 공항운영자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28조제3항제1호 중 “운항 및 지상안전”을 “운항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위축에”를 “위축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0. 관할 사업자·종사자 관련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 조치의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23의2.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이에 대한 감독 에 관한 사항

제28조제4항제15호 및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 2, 제17호 및 제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3항 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

15의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7.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수시검사(같은 조 제3항 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

17의2. 제17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수시검사

18.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같은 조 제3항 제23의2호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와 관련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은 제외)

제28조 제5항에 제8호의2 및 제8의3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같은 조 제3항 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

8의3.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9.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수시검사(같은 조 제3항 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

9의2. 제9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수시검사(같은 조 제3항 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

14.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이에

대한 감독

제29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사항

제29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검사”를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검사·지도·감독”을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3. 항공기상정보 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제33조제3항제1호 중 “운항 및 지상안전”을 “운항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취급업·대여업”을 “취급업·대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관할 사업자·종사자 관련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 조치의 총괄·조정

제33조제4항제12호 중 “운항증명”을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분야 안전운영체계”를 “분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5의2. 제15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 · 수시검사

제33조제4항제16호 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를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위촉에”를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분야 안전운영체계”를 “분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2. 국내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8의3.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9의2. 제9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 · 수시검사

15.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이에
대한 감독

제35조제2항제5호 중 “규정”을 “운영규정(SOP)”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통신사”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사항

14. 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의2제4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6호 중 “운항증명”을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6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인가”를 “인가, 정비규정 인가”로 하며, 같은 항 제29호 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를 “운항 및 감항 분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0호 중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를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및 제4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관할 사업자·종사자 관련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 조치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6의2. 국외운항을 하는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9의2. 제29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및 감항 분야 정기·수시검사

48.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이에 대한 감독

제35조의2제4항제49호부터 제5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60호 중 “위축에”를 “위축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항공정보업무(항공고시보는 제외한다)”를 “항공정보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보업무 담당자”를 “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통신업무 담당자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교통관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개정

12. 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13. 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37조제6항제4호 중 “지도·감독”을 “지도·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사항

별표 19 제1호나목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3월 31일”을 “2027년 3월 31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13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3조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한다.

국토교통부령 제133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 중 “2026년 6월 30일”을 “2028년 6월 30일”로 하며, 제4조 후단의 “2026년 7월 1일”을 “2028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⑩ (생략) ⑪·⑫ 삭제 ⑬ 항공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략) 13. <u>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u> 14.·15. (생략) <u><신설></u> 16. (생략) ⑭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18. <u>조종사(헬리콥터 분야 조종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등에 관한 사항</u> 19. <u>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u>	제12조(항공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⑬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u> 14.·15. (현행과 같음) 15의2. <u>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u> 16. (현행과 같음) ⑭ ----- -----. 1. ~ 17. (현행과 같음) 18. <u>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업무 정책에 관한 사항</u> 19. <u>조종사(헬리콥터 분야 조종사는 제외한다)의 운항자격 심사 및 이에 대한 위촉 심사 관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u>

20. (생 략)

⑮ 항공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제작 증명 및 안전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3.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기술기준 제정

4. (생 략)

5.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제도 및 기준수립에 관한 업무

6. 항공기, 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7. 7의2. (생 략)

8. 항공기 소음적합기준 마련 및 고시 등에 관한 사항

20. (현행과 같음)

⑮ -----
-----.

1. (현행과 같음)

2. 형식증명(승인),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승인), 제작 증명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운영하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포함한다)

3. -----
-----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5.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 관련 제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감독에 관한 사항

6. -----
-----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 7의2. (현행과 같음)

8. ----- 소음기준 및 소음기준 적합증명 관련 제도 및 정책-----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u>12.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의 제정·개정</u>	<u>12. 외국과의 항공안전협정 등 에 관한 사항</u>
13. 삭제	14. -----
14. 항공기 감항성 개선지시(A D) 발행 등	----- 등 지속감항성에 관한 사항
15. 삭제	16. 정비조직의 인증·항공안전 관리시스템·안전감독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u>16. 정비조직 인증 및 정비조직 의 안전감독 관련 법령의 제 정·개정</u>	21. 부품등제작자증명 관련 제 도·정책의 수립 및 시행·감 독에 관한 사항
17. ~ 20. 삭제	22. 수리개조승인 관련 제도·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
<u><신설></u>	23. 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 항
<u><신설></u>	24. 항공기등, 장비품, 부품의 설계·제작 관련 고장·결합 또는 기능장애 보고의무에 관 한 사항
<u><신설></u>	⑩ ----- -----.
⑩ 항공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항행분야 법령·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u>3. 공역·항공로의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u>	<u>3. 공역, 항공로 및 공항의 표준출발·도착 비행절차(이하 이하에서 “비행절차등”이라 한다) 관련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u>
<u><신설></u>	<u>3의2. 비행절차등의 설계 승인 및 품질보증(유효성 확인 등) 감독에 관한 사항</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u>5. 공역위원회의 운영</u>	<u>5. 공역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u>
<u>6.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에 관한 사항</u>	<u><삭제></u>
<u>7.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u>	<u><삭제></u>
8. ~ 10. 삭제	
<u>11. 항공기상에 관한 정보 제공 관련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u>	<u>11. 항공교통관제시설 등에 제공되는 항공기상 정보에 관한 기준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12. ~ 19. (생략)	12. ~ 19. (현행과 같음)
20. 삭제	
<u>21. 항행분야의 법령·규정의</u>	<u>21. 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의</u>

<u>제정·개정 및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u>	<u>운영절차 표준안</u> ----- -----
22. <u>항행분야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감독관 자격관리</u>에 관한 사항	22. ----- ----- ----- <u>감독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u>-----
23. <u>삭 제</u>	<u><삭 제></u>
24. <u>항공고정통신 및 항공이동통신 분야의 안전감독 규정의 제정·개정, 안전감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안전감독관 자격관리</u>에 관한 사항	
25.·26. (생 략)	25.·26. (현행과 같음)
27. <u>항공교통 및 항공통신업무</u>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실태 감독에 관한 사항	27. <u>항공교통업무</u>----- ----- -----
28. <u>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 승인</u>에 관한 사항	28. ----- ----- <u>승인 등</u>-----
29. <u>삭 제</u>	
30. <u>항행분야 국제표준의 제정·개정, 항행감독, 국제평가</u>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0. ----- <u>이행</u> - ----- -----
<u><신 설></u>	31. <u>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품질관리 관련 정책 및 감독</u>에 관한 사항

⑰ 항행위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u><신설></u> 2. <u>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운영</u> 3. <u>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 및 운영</u> 4. <u>항행안전무선·항공정보통신·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유지</u> 5. <u>항행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u> 6. <u>항행시설의 관리검사 등 각종 검사에 관한 사항</u> 7. (생략) 8. <u>항행시설의 연구개발</u> 9. (생략)	⑰ ----- -----. 1. (현행과 같음) 1의2. <u>항행안전시설·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법령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u> 2. <u>위성항법·항공교통관리시설의 구축·운영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3. <u>항공정보통신업무의 제공·운영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4. ----- ----- ----- -- <u>관리·유지 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5. ----- <u>관련</u> ----- ----- 6. ----- <u>관련 정책 및 감독 등</u>----- 7. (현행과 같음) 8. ----- <u>연구개발에 관한 정책</u> 9. (현행과 같음)
---	---

10. 항행시설의 비행검사에 <u>관</u> <u>한</u> 사항	10. ----- <u>대</u> <u>한 정책 · 감독에 관한</u> ----- -----
11. · 12. (생 략)	11. · 12. (현행과 같음)
13.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 정보통신시설의 <u>성능적합증명</u>	13. ----- ----- <u>성능적합증명</u> <u>관련 정책 및 감독에 관한 사</u> <u>항</u>
14.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 정보통신시설의 주파수 <u>이용</u> 에 관한 사항	14. ----- ----- <u>이용</u> <u>허가</u> -----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⑱ 항공자격국제협력팀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 -----.
1.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제도 및 <u>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u> <u>의 운영에</u> 관한 사항	1. ----- -- <u>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u> <u>도 등에 대한 정책 및 감독</u> -- -----
2.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 치는 제외한다) 조종자 및 경 량항공기 조종사 <u>자격기준</u> 에 관한 사항	2. ----- ----- ----- <u>자격기준 및</u> <u>감독</u>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항 공신체검사증명제도의 <u>기준</u> <u>수립</u>	4. ----- ----- <u>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5. ~ 10. (생략)	5. ~ 10. (현행과 같음)
①9 (생략)	①9 (현행과 같음)
②0 공항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0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공항 안전관리시스템(SMS)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사항</u>	4. <u>공항운영자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대한 승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공항구조·소방 등 공항 위기관리 시스템의 운영 관리</u>	7. ----- ---- <u>시스템 운영 감독에 관한 사항</u>
8. ~ 19. (생략)	8. ~ 19. (현행과 같음)
20. <u>공항 내 지상조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20. ----- ----- <u>감독</u>
21. <u>공항안전 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에 관한 사항</u>	21. ----- -- <u>제한표면 기준 수립 및 시행</u>
22. (생략)	22. (현행과 같음)
②1·②2 (생략)	②1·②2 (현행과 같음)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② (생략)	제28조(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③ ----- -----.
1. <u>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u>	1. <u>운항안전</u> -----

도 · 감독 2. ~ 9. (생 략) 10. <u>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소형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 정비업자 및 전문교육기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u> 11. ~ 22. (생 략) 23.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u>위촉에 관한 사항</u> <u><신 설></u> 24. (생 략)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 략) 15. <u>국내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u>	----- 2. ~ 9. (현행과 같음) 10. <u>관할 사업자 · 종사자 관련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 · 조정</u> <u>에 관한 사항</u> 11. ~ 22. (현행과 같음) 23. ----- -----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 ----- 23의2. <u>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u> 24. (현행과 같음) ④ -----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 <u>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u>-----<u>(같은 조 제3항 제23호의2에 따른</u>
---	--

<신 설>

16. (생 략)

17.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
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신 설>

18.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
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
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
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
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
외)

15의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
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
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6. (현행과 같음)

17.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
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
업자 ----- 분야 -
--(같은 조 제3항 제23호의2
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
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
는 제외)

17의2. 제17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
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수시검사

18.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 사용
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

정지 명령

19. 삭 제

20. (생 략)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설>

-----(같은 조 제3항 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와 관련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은 제외)

20. (현행과 같음)

⑤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같은조제3항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

8의3.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9. <u>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u> 정기·수시검사 <u><신 설></u> 10. ~ 12. (생략) 13. 삭제 14. <u>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u>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	9. <u>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u> ----- 분야 -----(같은조제3항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 9의2. 제9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한 감항 분야 정기·수시검사 (같은조제3항제23호의2에 따른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제외) 10. ~ 12. (현행과 같음) 14. <u>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이에 대한 감독</u> 제29조(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
--	--

국) ①・② (생략) ③ 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략) 9. <u>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u> 10. (생략) ④ 항공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u>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u> 4. ~ 7. (생략) ⑤ 통신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2. <u>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허가 및 검사</u> 3. <u>비행장・공항의 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의 관리에 관한 검사・지도・감독</u> 4. ~ 12. (생략)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② (생략) ③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u>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사항</u> 10.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u>항공기상정보 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u> 4. ~ 7.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 <u>관리</u> 3. ----- ----- ----- <u>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 12. (현행과 같음) 제33조(부산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분장한다.

1. 운항 및 지상안전에 관한 지
도 · 감독
2. ~ 9. (생략)
10. 삭제
11. 항공기 취급업 · 대여업 등
등록에 관한 사항

12. 국내항공운송사업자 ·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 항공기정비
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의 안전
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 ~ 18. (생략)

④ 항공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략)
12. 국내항공운송사업 · 소형항
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
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신설>

13. (생략)

-----.

1. 운항안전-----

2. ~ 9. (현행과 같음)

11. ----- 취급업 · 대여업, 소형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
업,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변경 등 -----
--

12. 관할 사업자 · 종사자 관련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
험도 경감조치의 총괄 · 조정
에 관한 사항

13. ~ 18. (현행과 같음)

④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12의2.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
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
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3. (현행과 같음)

14.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등록,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5.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신 설>

16.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정지 명령

17. ~ 20. (생략)

21.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⑤ 항공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5.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 분야 -----

15의2. 제15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분야 정기·수시검사

16.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운용자-----

17. ~ 20. (현행과 같음)

21. ----- 위촉 및 심사결과 감독 등에 -----

⑤ -----
-----.

1. ~ 3. (생략)

4. 항공기 정비수리사업자 및 정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5. 삭제

6. (생략)

7. 항공기 정비업 등록에 관한 사항

8. (생략)

<신설>

<신설>

9.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6. (현행과 같음)

<삭제>

8. (현행과 같음)

8의2.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용사업의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8의3. 국외 운항을 하는 자가용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감항 분야 기술 검토에 관한 사항

9.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 분야 -----

9의2. 제9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 등에 대

10. ~ 13. (생략) 14. 삭제 15. <u>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독</u>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① (생략) ② 항공관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항공통신업무 관련 <u>규정의 제정·개정</u> 6. 소속 <u>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통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7. ~ 9. (생략) 10. <u>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지도·감독</u> 11. (생략) 12. 삭제 13. <u>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 운영</u>	<u>한 감항 분야 정기·수시검사</u> 10. ~ 13. (현행과 같음) 15. <u>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이에 대한 감독</u> 제35조(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운영규정(SOP)</u>---- 6. --- <u>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항공통신업무 담당자 등</u>----- ----- ----- 7. ~ 9. (현행과 같음) 10. <u>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u> 11. (현행과 같음) 13. <u>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한 사항</u>
---	--

<신 설>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③ (생 략)

④ 안전운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정비업자 및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14. ~ 25. (생 략)

26.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신 설>

27. 국내항공운송사업·소형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 사용사업 운항규정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8. (생 략)

29.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

14. 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

제35조의2(제주지방항공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관할 사업자·종사자 관련 항공안전위해요인 관리 및 위험도 경감조치의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14. ~ 25. (현행과 같음)

26. -----

--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26의2. 국외운항을 하는 자가용항공기에 대한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에 관한 사항

27. -----

----- 인가, 정비규정 인
가-----

28. (현행과 같음)

29.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을 받은 국내항공

용사업자에 대한 운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신 설>

3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
용사업자에 대한 항공기 운항
의 정지 및 항공종사자 업무
정지 명령

31. ~ 42. (생략)

43.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
용사업자에 대한 감항 분야
안전운영체계 정기·수시검사

44.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 사
용사업자의 정비규정의 인가,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45. · 46. (생략)

47. 삭제

48. 정비조직 인증(AMO) 및 감

운송사업자·소형항공운송사
업자 ----- 운항 및 감항
분야 -----

29의2. 제29호에 따른 운항증명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대상 이외의 항공기 사용사업
자 및 자가용 항공기에 대한
운항 및 감항 분야 정기·수
시검사

30. 국내항공운송사업자·소형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 사용
사업자 및 자가용 항공기운용
자-----

31. ~ 4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5. · 46. (현행과 같음)

48. 정비조직에 대한 인증(AM

<u>독</u>	<u>O),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u>
	<u>및 이에 대한 감독</u>
<u>49. 항공정보통신실 근무자의</u>	<u><삭 제></u>
<u>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u>50. 항공고시보 취급에 관한 사</u>	<u><삭 제></u>
<u>항</u>	
<u>51. 항공통신업무의 개선 및 연</u>	<u><삭 제></u>
<u>구·지도</u>	
<u>52. 항공통신업무 관련 규정의</u>	<u><삭 제></u>
<u>제정·개정</u>	
<u>53. 항공통신사의 교육훈련에</u>	<u><삭 제></u>
<u>관한 사항</u>	
<u>54. 항공고정통신망 가입 승인</u>	<u><삭 제></u>
<u>에 관한 사항</u>	
<u>55. 항공통신의 운용관리 및 지</u>	<u><삭 제></u>
<u>도·감독</u>	
<u>56. 항공통신업무 안전관리시스</u>	<u><삭 제></u>
<u>템(SMS) 운영</u>	
57. ~ 59. (생략)	57. ~ 59. (현행과 같음)
60. 헬리콥터 분야 조종사의 운	60. -----
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	----- 위촉 및 심
한 사항	사결과 감독 등에 -----

⑤ 항공관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⑤ -----
분장한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항공정보업무(항공고시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u>	4. <u>항공정보업무</u> -----
5. <u>항공교통관제 및 항공정보업무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u>	5. <u>항공교통관제,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통신업무 관련 운영규정(SOP)의 제정·개정</u>
6. 소속 <u>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보업무 담당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u>	6. --- <u>전문항공교통관제사, 비행정보업무 담당자 및 통신업무 담당자 등</u> -----
7. ~ 11. (생략)	7.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12. <u>항공고정통신망 사용자의 가입처리에 관한 사항</u>
<u><신설></u>	13. <u>항공통신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u>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 ⑤ (생략)	제37조(김포항공관리사무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제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항의 전자·통신 및 전기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u>지도·감독</u>	4. ----- <u>지도·관리</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u>	6. <u>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u>

<u>템(SMS) 운영</u>	<u>템(SMS)에 관한 사항</u>
------------------	----------------------